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0호(號)

1927(昭和 2)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號)(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중(中) 1930(昭和 5)년 2월 16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30(昭和 5)년 1월 16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자작(子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8장(章)」을 「제9장(章)」으로, 「제7장(章)」을 「제8장(章)」으로, 「제6장(章)」을 「제7장(章)」으로, 「제5장(章)」을 「제6장(章)」으로 개정(改正)함.

목차(目次) 중 「제4장(章) 인도(引渡)」의 다음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함.

제5장 집화(集貨) 및 배달(配達)

제1절 통 칙(通則)

제2절 집 화(集貨)

제3절 배 달(配達)

제11조(條) 화물(貨物)의 접수시간(接受時間)은 특별히 정(定)한 경우를 제(除)하고 다음 [左]과 같이 함.

1. 집화(集貨)에 대한 것 별도(別途)로 정(定)한 역(驛) 및 화물취급소[荷扱所](이하 간단히 역[驛]이라 칭[稱]함)

오전(午前) 8시부터 오후(午後) 8시까지

기타(其他) 역(驛)

오전(午前) 8시부터 오후(午後) 4시까지

2. 기타(其他)의 화물(貨物)

각(各) 역(驛)

오전(午前) 8시부터 오후(午後) 4시까지

접수시간(接受時間) 내(內)라도 즉시 발송(發送)함을 부득(不得)한 경우에 있어서는 화물(貨物)의 접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야 함.

(주[註]1)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취급세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取扱稅則): 이하 간단히 세칙이라 칭[稱]함 제4조(條) 참조(參照)

(주[註]2) 접수시각(接受時刻)은 역(驛) 또는 지정(指定) 운송취급인(運送取扱人)에게서 운송(運送)의 신청(申請)을 받은 때로 함.

(주[註]3) 「특별히 정(定)한 경우」란 세칙(細則) 제4조(條)에 의(依)하여 운수사무소장(運輸事務所長) 또는 청진출장소장(淸津出張所長)이 특별히 정(定)한 경우를 말함.

주[註]4) 「즉시 발송(發送)함을 부득(不得)한 경우」란 적재(積載)할 화차(貨車)가 만

재(滿載)가 된 경우와 같음을 말함.

제12조(條) 하송인(荷送人)은 화물(貨物) 탁송(託送) 때 1구(口)마다[열차로 전용(專用)하여 동시(同時)에 운송(運送)하는 차급(車扱) 및 특종급(特種扱) 화물(貨物: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것,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청구[請求]한 것 및 운임[運賃], 요금[料金] 등 착불[著拂]의 취급을 청구한 것을 제[除]함)에 대한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에는 하수인(荷受人) 및 착역(著驛)을 똑같이 함과 동시에 탁송(託送)의 것에 한(限)하여 수구(數口)를 기입(記入)함을 득(得)함]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을 제출함으로 함. 단(但) 집화부화물(集貨附貨物)에 대하여는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경우를 제(除)하고 이것을 요(要)하지 아니함.

1.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경우
2.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청구(請求)한 경우
3. 수류(獸類)를 탁송(託送)한 경우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의 제출(提出)을 요(要)하지 아니한 화물(貨物)의 하송인(荷送人)은 탁송(託送) 때 제14조(條)제1항(項)에 정(定)한 사항(事項)을 신고(申告)해야 함으로 함.

(주[註]1) 집화(集貨)를 취급(取扱)하는 화물(貨物)의 제한(制限)에 대하여는 제39조(條)의 3 참조(參照).

제13조(條)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의 양식(儀式)은 아래[左]와 같이 함.

(양식 생략[樣式省略])

제14조(條)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에는 다음[左]의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고, 하송인(荷送人)이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署名)하는 것으로 함.

1.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 작성의 장소 및 연월일(年月日)과 운송신청(運送申請)의 연월일(年月日).
2. 발역명(發驛名) 및 착역명(著驛名)(필요에 따라 소속선명[所屬線名] 포함[包含])과 전용선(專用線) 또는 화물지선(貨物支線) 발(發) 또는 착(著)의 것에 있어서는 그 전용선 또는 화물지선 명(名).

전용선 또는 화물지선 명(名)은 발역란(發驛欄) 또는 착역란(著驛欄)에 부기(附記)할 것.

3. 하송인(荷送人)의 성명[氏名] 또는 상호(商號) 및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와 집화부화물(集貨附貨物)로서 집화지(集貨地)가 하송인(荷送人)의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와 다른 때는 그 집화지(集貨地). 단(但) 주소 또는 영업소는 특별히 기재(記載)하지 아니해도 명확히 인지(認知)될 때는 생략(省略)함을 득(得)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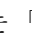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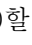
가. 하송인명(荷送人名)은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경우를 제(除)하고 지정운송취급인(指定運送取扱人)에 한(限)하여 철도(鐵道)가 작업상(作業上) 필요 있다고 인정(認定)하여 승인(承認)한 기호(記號)로 표시(表示)함을 득(得)함.

- 나. 집화지(集貨地)는 기사란(記事欄)에 기입할 것.
4. 하수인(荷受人)의 성명[氏名] 또는 상호(商號) 및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와 배달부화물(配達附貨物)로서 송달처(送達處)가 하수인(荷受人)의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와 다른 때는 그 송달처. 단(但)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는 특별히 기재(記載)하지 아니해도 명확히 인지(認知)될 때는 생략(省略)함을 득(得)함.
5. 화물(貨物)의 품명(品名) 및 필요(必要)에 따른 성질(性質), 기호(記號) 및 포장(包裝)의 종류(種類).
- 가. 품명(品名)은 성질(性質), 상태(狀態) 등 운임계산(運賃計算)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모두 아는 것을 득(得)할 정도로 기입(記入)할 것. 단(但) 등급표(等級表) 상(上)의 품목(品目)을 기재(記載)하는 것을 득(得)함. 이 경우 화물(貨物)이 등급표(等級表) 상(上) 「기타(其他)」 또는 「기타 무엇무엇[何何]」에 해당할 때는 품명(品名)에 그 등급을 제일 앞에 기입한[冠記] 것. 또 하나의 곤포(梱包) 중(中)에 2종(種) 이상의 화물(貨物)을 섞은 경우는 제49조(條)제2항(項)의 경우를 제(除)하고 「무엇무엇(재중품[在中品] 중[中] 최고급[最高級]의 등급[等級]에 속[屬]하는 품명[品名]) 외(外)」라 기입(記入)함을 득(得)함.
- 나. 제49조(條)제2항(項)의 경우는 「잡품(雜品)」이라 기입(記入)할 것.
- 다.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경우는 품명[銘柄: brand], 등급(等級) 등(等) 상거래(商去來) 상(上)의 칭호(稱號)도 기입(記入)할 것.
- 라. 제7조(條)에서 정(定)한 표준중량(標準重量)에 의(依)하여 취급(取扱)하는 화물(貨物)은 품명(品名) 및 포장란(包裝欄)에 그 한 개[一箇]의 용량(容量) 기타(其他)의 구별(區別)을 부기(附記)할 것. 이 경우 ㉔이라는 약호(略號)를 사용함을 득(得)함.
- 리. 얼음[氷]을 혼입(混入)한 화물(貨物)은 품명란(品名欄) 및 포장란(包裝欄)에 「얼음 혼입[氷入]」이라 부기(附記)할 것.
- 마 포장(包裝)의 종류(種類)는 아래[左]의 기호(記號)로 기입(記入)함을 득(得)함.

포장(包裝)	기호(記號)
간단한 꾸러미[安平包]	
대[筵], 줄[菰] 또는 왕골로 짠[蓆] 꾸러미[包]	
벼짚으로 묶은 꾸러미[藁包]	
새끼로 묶은 꾸러미[繩縛]	
틀로 짠 꾸러미[杼縛] 또는 판자들이[杼入]	

칠사로 묶은 꾸러미[針金締]	
요철식으로 묶은 꾸러미[板締]	
통들이[桶入]	
나무통들이[樽入]	
수하물 꾸러미[行李入]	
캔들이[罐入]	
가마니들이[臥入]	
고리짝으로 된 꾸러미[梱合]	
옹기들이[甕入]	
자루들이[俵入]	
대바구니들이[籠入]	
상자들이[箱入]	
포대들이[袋入]	
포로 싸고 쇠테로 묶은 꾸러미[布包帶鐵締]	
대밭로 묶은 꾸러미[簣卷]	

6. 화물(貨物)의 개수(箇數: 날개로 적재[積載]하여 개수[箇數]의 계산[計算]을 곤란[困難]하게 한 것을 제[除]함) 및 중량(重量: 급외품[級外品] 제3종[種] 가축[家畜] 및 동[同] 제5종[種] 사체[死體]를 제[除]함). 단(但) 용적(容積)에 의(依)하여 운임(運賃)을 계산(計算)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용적(容積), 길이[長], 폭(幅), 두께[厚] 모두 품명(品名)마다(하나로 된 곤포[梱包]를 제[除]함)에 개수 및 실 중량(實重量: 표준중량[標準重量]에 의[依]하여 취급[取扱]하는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이것에 기초[基礎]하여 계산한 중량[重量]을 기입[記入]할 것). 단(但) 「날개」로 적재(積載)한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개수란(箇數欄)에 「날개」라고 기입할 것.
7. 제59조(條)에 의(依)하여 운임(運賃)의 할증(割増)을 해야 할, 크기나 무게가 제한(制限)을 초과(超過)한 물품(物品)에 있어서는 할증의 기초(基礎)인 길이[長], 중량(重量) 또는 용적(容積).
8. 급종별(扱種別).

9. 운임(運賃), 할증임금(割増賃金), 요금(料金) 지불방법(支拂方法).
10. 가격(價格)을 명시(明示)해야 할 경우는 그 가격.
11. 고가품(高價品) 및 수류(獸類)에 대하여는 철도(鐵道)가 청구(請求)한 할증임금(割増賃金)의 지불(支拂)에 응(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취지(趣旨), 할증임금지불여부란[割増賃金支拂應否欄]에 「부(否)」라 기입(記入)할 것.
12.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경우는 그 취지(趣旨).
13.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청구(請求)한 경우는 상환대금액(相換代金額).
14. 제92조(條)에 의(依)하여 열차(列車)를 지정(指定)한 경우는 그 취지(趣旨), 기사란(記事欄)에 「열차지정(列車指定)」이라 기입하고, 그 외 지정구간(指定區間), 월일(月日) 및 열차번호(列車番號)를 부기(附記)할 것.
15. 집화부(集貨附) 또는 배달부(配達附) 화물(貨物)은 그 취지(趣旨), 집화부(集貨附)의 것은 「집화(集貨)」 또는 「」이라고, 배달부(配達附)의 것은 「배달」 또는 「」라고 기사란(記事欄)에 기입(記入)할 것.
16. 부첨인(附添人)을 첨가(添加)한 때는 그 원수(員數), 기사란(記事欄)에 기입(記入)할 것.
17. 화약(火藥), 총용실포(銃用實包), 총용공포(銃用空包) 또는 총용실포, 총용공포에 요(要)하는 뇌관(雷管) 혹은 뇌관부(雷管附) 약협(藥莢)을 탁송(託送)할 경우는 내용물(內容物)의 수량(數量), 기사란(記事欄)에 화약류(火藥類)에 있어서는 「내용물 몇 근(斤)」이라고, 총용실포(銃用實包), 총용공포(銃用空包) 또는 총용실포, 총용공포에 요(要)하는 뇌관(雷管) 혹은 뇌관부(雷管附) 약협(藥莢)에 있어서는 「내용물 몇 근(斤)」이라고 기입(記入)할 것.
18. 외국화물(外國貨物)에 있어서는 그 취지(趣旨) 및 운송면장(運送免狀) 번호(番號), 기사란(記事欄)에 「외국화물 운송면장 제 몇 호[外國貨物運免第何號]」라고 기입(記入)할 것.
19. 화물(貨物)에 유손(濡損)¹⁾ 기타의 이상(異狀)이 있는 경우는 그 현상(現狀), 기사란(記事欄)에 기입할 것.
20. 별도(別途)로 정(定)한 바에 의하여 화차(貨車)의 봉인(封印)을 생략(省略)한 경우는 그 취지(趣旨), 기사란(記事欄)에 「봉략(封略)」이라고 기입(記入)할 것.
21. 특약(特約)이 있을 때는 특약조건(特約條件) 또는 그 약호(略號), 전항(前項) 제11호(號) 및 제19호(號)에서 제21호(號)까지의 기재(記載)를 한 경우는 하송

1) 역자: 창고나 부선(艇船)에 보관 중에 우수, 침수 등으로 유손 또는 오손(汚損)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고나 선창보관 중에 통풍 부족에 의한 발한(發汗), 하역, 운송 중의 조유(潮濡) 등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유손에 대해서는 선주(船主) 측의 면책(免責)이 인정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유손보험을 특약하여야 한다.

인(荷送人)이 그 개소(箇所)에 날인(捺印)해야 하는 것으로 함.

(주[註]1) 제31조(條), 세칙(細則) 제6조(條) 및 제47조(條) 참조(參照).

(주[註]2) 특약조건(特約條件)에 대하여는 제24조(條) 참조(參照).

(주[註]3) 제1항(項)제3호(號) 및 제4호(號) 단서(但書)의 하송인(荷送人) 또는 하수인(荷受人)의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로서 「특별히 기재(記載)하지 아니해도 명확하다고 인지될 때」란 화물(貨物)이 지정운송취급인(指定運送取扱人), 착명(著名)의 상점(商店), 공장(工場), 관공서(官公署) 등에 발착(發著)할 때와 같음을 말함.

(주[註]4) 제1항(項)제5호(號)의 「품명[銘柄]」이란 화물의 산지(產地), 제조공장(製造工場) 등(等)의 상위(相違)에 의하여 그 품질(品秩) 외관(外觀)에 다소(多少)의 차이(差異)가 있는 경우 이것을 나타내는 칭호(稱號)를 말하고, 널리 사용(使用)하는 거래상(去來上)의 목표(目標)로서 생산지(生産地) 혹은 제조공장(製造工場) 또는 상표(商標) 등(等)에 의(依)하여 구별(區別)하는, 예(例)를 들면, 군산미(群山米), 조종인면사(釣鐘印綿絲), 부도(敷島)(연초[煙草]) 등(等)과 같음. 또 「등급(等級)」이란 계급(階級)에 의(依)하여 가격(價格)에 차이(差異)가 있는 경우 이것을 명시(明示)한 것으로서 시장(市場)에서 그 시가(市價) 결정(決定)의 표준(標準)이 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1등미(等米), 2등미, 우등품(優等品), 1등품(等品) 등(等)과 같음.

(주[註]5) 제1항(項)제6호(號)의 「납개로 적재(積載)하여 개수(箇數)의 계산(計算)을 곤란(困難)하게 한 것」이란 석탄(石炭), 자갈[砂利], 흙[土], 옥석(玉石)과 같이 실제상(實際上) 개수(箇數)의 계산(計算)이 불가능(不可能)하거나 또는 수(數)를 줄이기가 곤란(困難)한 것을 말함.

(주[註]6) 하송인(荷送人)이 인장(印章)을 휴대(攜帶)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명(署名) 또는 무인(拇印)으로 날인(捺印)을 대신(代身)함을 득(得)하는 것으로 함.

제16조(條) 소화물급화물(小貨物扱貨物)로서 집화부(集貨附)가 아닌 것, 급외품(級外品) 제1종(種) 화약류(火藥類) 중(中) 을(乙) 또는 병(丙)에 속(屬)한 것 및 차급화물(車扱貨物)로서 도중(途中) 적환(積換)으로 운송(運送)하는 것은 하송인(荷送人)이 아래[左]와 같은 사항(事項)을 명료(明瞭)하게 기재(記載)한 꼬리표[荷札]를 매개(每箇) 양단(兩端: 포장[包裝]이 동일한 화물[貨物]로서 1구[口]에 상당[相當]하는 개수[箇數]에 이른 것은 1단(端)만 붙이는 것을 득[得]함에 부착(附著)해야 함으로 함. 단(但) 철관(鐵管), 철판(鐵板) 등(等) 꼬리표를 부착(附著)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페인트(paint) 류(類)로 보기 쉬운 개소(箇所)에 소정(所定)의 사항(事項)을 기입(記入)하여 꼬리표의 부착을 대신하는 것을 득(得)함.

1. 발착역명(發著驛名: 이외[以外]에 혼동[混同]하기 쉬운 역명[驛名]이 있을 때 또는 다른 철도(鐵道) 혹은 항로(航路) 착(著)의 것에 대하여는 그 소속선(所屬線) 명(名) 포함[包含]함).

2. 하송인(荷送人) 및 하수인(荷受人)의 성명[氏名] 또는 상호(商號) 및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 단(但)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는 특별히 기재(記載)하지 아니하여도 명확히 인지(認知)할 때는 생략(省略)하는 것을 득(得)함.


하송인명(荷送人名) 및 하수인명(荷受人名)은 지정운송취급인(指定運送取扱人)의 경우에만(限)하여 제14조(條)제1항(項)제3호(號) 및 제4호(號)의 기호(記號)로 표시(表示)함을 득(得)함.

3. 품명(品名)

1구(口)1품(品)의 경우는 그 화물(貨物)의 품명(品名)을, 또 1구(口)2품(品) 이상의 경우는 「무엇무엇(하물운송장[荷物運送狀] 표면[表面] 초필(初筆)의 품명[品名], 또 화물운송장의 제출(提出)을 요(要)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주[主]된 화물[貨物]의 품명[品名]외(外)」라 기재(記載)할 것.

4. 개수(箇數)

5. 배달부화물(配達附貨物)에 대하여는 그 표시(表示),

착역(著驛名)의 아래[下]에 「배달(配達)」 또는 「」라고 부기(附記)할 것.

6. 앞[前] 각(各) 호(號)에 정(定)한 기재사항(記載事項)의 외(外) 지정운송취급인(指定運送取扱人)을 하송인(荷送人)으로 한 경우는 하송인명(荷送人名)의 옆에 「지정운송취급인(指定運送取扱人)」이라고, 또 전국꼬리표동업조합원[全國荷札同業組合]의 제조(製造)한 꼬리표에는 표면(表面)에 구멍이 뚫린 속지[鳩目紙]의 상부(上部)에 용지(用紙)의 중량(重量) 및 제조업자명(製造業者名)을 표시함을 득(得)함.

전항(前項)의 꼬리표는 폭(幅) 2촌(寸) 이상(以上), 길이[長] 4촌(寸) 이상(以上)의 백(白) 또는 연갈색[淡茶色]의 것으로서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강도(強度)를 가지고 또 상당히 강(強)한 철선(鐵線) 또는 삼실[麻絲] 등[類]을 부착(附着)한 것을 표준(標準)으로 함.

1. 습윤성(濕潤性)의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목찰(木札) 기타(其他) 습기(濕氣)에 견디는 것.

2. 기타(其他)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모조지(模造紙) 정(正) 150근(斤) 이상(以上)의 강도(強度)를 가지고 그 양면(兩面)에 모조지(模造紙) 정(正) 200근(斤) 이상(以上)의 강도(強度)를 가지는 구멍이 뚫린 속지[鳩目紙]를 부착(附着)한 지제(紙製)로 된 것 또는 이것과 동일한 정도(程度)의 포제(布製) 기타(其他)로 된 것.

(주[註]1) 「차급화물(車扱貨物)로서 도중(途中) 적환(積換)으로 운송하는 것」이란 협궤철도(挾軌鐵道) 또는 항로(航路)와 연락(連絡)하여 운송(運送)하는 경우와 같음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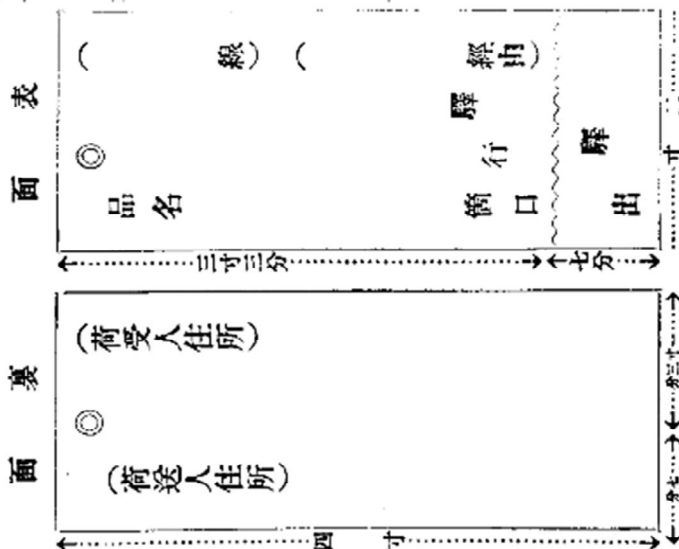
(주[註]2) 꼬리표의 부착매수(附着枚數)는 본조(本條)제1항(項) 외(外) 착역(著驛)에 직통(直通)하는 적합차(積合車)에 의(依)하는 등(等) 도중(途中) 적환(積換)을 요(要)하지 아니하는 화차(貨車)로 운송(運送)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지장(支障)이 없다고 인지(認知)될 때는 1매(枚)로 해도 무방(無妨)한 것으로 함.

(주[註]3) 하송인(荷送人) 또는 하수인(荷受人)의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로서 「특별히 기재(記載)하지 아니해도 명확히 인지될 때」란 화물(貨物)이 지정운송취급인(指定運送取扱人), 착명(著名)의 상점(商店), 공장(工場), 관공서(官公署) 등(等)에 발착(發著)할 때 또는 원꼬리표[元繪符]가 부착된 때와 같음을 말함.

(주[註]4) 집화부화물(集貨附貨物)에 대한 꼬리표는 지정운송취급인(指定運送取扱人)으로써 부착(附着)한 것으로 함(세칙[細則] 제92조[條]의 24 참조[參照]).

(주[註]5) 세칙(細則) 제12조(條) 및 제13조(條) 참조(參照).

제17조(條) 꼬리표는 아래[左]에 예(例) 의(依)하여 명료(明瞭)하게 묵서(墨書) 또는 인쇄(印刷)한 것으로 함.



비고 괄호(括弧) 내(內)는 필요(必要)에 따라 기입(記入).

(주[註]1) 꼬리표는 화물(貨物) 자체(自體)의 행선지(行先地)을 지시(指示)한 유일(唯一)의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명료(明瞭)하게 기재할 것. 또 기재문자(記載文字)를 색판 인쇄(色刷)와 같은 것은 무방(無妨)하지만, 필기용 잉크(copying ink), 연필(鉛筆) 등의 사용은 습윤(濕潤) 등(等)으로 인(因)하여 선명(鮮明)함을 결(缺)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避)하는 것으로 함.

제18조(條) 삭제(削除).

제20조(條)에 아래[左]의 주(註)를 추가(追加)함.

(주[註]2) 집화부화물(集貨附貨物)에 대한 통지서(通知書)의 작성(作成) 및 교부(交付) 방법(方法)에 대하여는 제39조(條)의 4 및 제39조(條)의 5와 세칙(細則) 제92조(條)의 21 및 제92조(條)의 22 참조(參照).

제21조(條)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의 양식(樣式)은 아래[左]와 같이 함.

(양식 생략[樣式省略])

제22조(條) 삭제(削除)

제23조(條)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양식(樣式)은 아래[左]와 같이 함.

(양식 생략[樣式省略])

제24조(條) 중(中)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 및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에 기입(記入)함을 득(得)하는 약호(略號)」를 「동상(同上)의 약호(略號)」로 개정(改正)하고 아래[左]의 1항(項)을 추가(追加)함.

전항(前項)의 특약조건(特約條件)에 대한 약호(略號)는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 또는 집화표(集貨票)를 작성(作成)할 경우에 사용(使用)하는 것을 득(得)함.

제24조(條)의 2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의 제출(提出)을 요(要)하지 아니하는 화물(貨物)의 운송(運送)에 대한 특약(特約)이 있을 때 또는 화물(貨物)에 이상(異狀)이 있을 때는 집화표(集貨票)에 하송인(荷送人)이 특약조건(特約條件) 혹은 그 약호(略號) 또는 화물(貨物)의 상태(狀態)를 기입(記入)하고 날인(捺印)하는 것으로 함.

(주[註]1)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의 제출(提出)을 요(要)하지 아니하는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제22조(條)제1항(項) 참조(參照).

제5장(章) 집화(集貨) 및 배달(配達)

제1절(節) 통 칙(通則)

제39조(條)의2 소화물급화물(小貨物扱貨物)은 본장(本章)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집화(集貨) 및 배달(配達)의 취급(取扱)을 함.

집화부(集貨附) 또는 배달부(配達附) 화물(貨物)의 취급(取扱)에 관하여 본장(本章)에 별단(別段)의 규정(定)이 없는 사항(事項)에 대하여는 일반적(一般的)인 관례[列]에 의(依)함.

(주[註]1) 집화(集貨) 및 배달(配達)을 취급(取扱)하는 화물(貨物)의 제한(制限)에 대하여는 다음 조[次條] 및 제39조(條)의6 참조(參照).

(주[註]2) 집화(集貨)와 배달(配達)은 불가분(不可分)의 것이 아니므로 집화부(集貨附)의 것을 역에 있거나[驛留] 또는 역이 위탁[驛託]하는 것을 배달부(配達附)로 위탁(受託)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무방(無妨)한 것으로 함.

제2절(節) 집 화(集貨)

제39조(條)의 3 소화물급화물(小貨物扱貨物)은 하송인(荷送人)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것을 제(除)하고 별도(別途)로 정(定)한 구역(區域) 내(內)에 있어서 하송인(荷送人)이 지정(指定)한 개소(箇所)에서 집화(集貨)함. 이 경우는 제65조(條)의2에서 정(定)한 집화료(集貨料)를 수수(收受)함.

1. 급외품(級外品).
2. 1개(箇)의 길이[長] 18척(尺), 중량(重量) 200근(斤: 면포[綿布]를 제[除]함) 또는 용적(容積) 40입방척(立方尺)을 초과(超過)한 것.
3. 외국화물(外國貨物)로서 취급(取扱)해야 하는 것.
4. 고가품(高價品)

(주[註]1) 「별도(別途)로 정(定)한 구역(區域)」이란 별도(別途)로 시달(示達)한 화물집배구역(貨物集配區域)을 말함.

제39조(條)의 4 집화부화물(集貨附貨物)에 대한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 또는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은 집화(集貨)를 종료(終了)한 후(後) 하송인(荷送人)에게 교부(交付)함.

제39조(條)의 5 집화부화물(集貨附貨物)의 운송(運送)을 인수(引受)하고 또 그 인도(引渡)를 받은 때는 집화표(集貨票)를 하송인(荷送人)에 교부(交付)함. 단(但) 다른 방법(方法)에 의(依)하여 화물(貨物)의 수수(收受)가 명확한 때는 이것을 교부(交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집화표(集貨票)에는 화물(貨物)의 품명(品名), 포장(包裝), 개수(箇數), 중량(重量), 집화(集貨地)과 하송인(荷送人) 및 하수인(荷受人)의 성명[氏名] 또는 상호(商號) 등을 기재(記載)함. 단(但) 사정(事情)에 의(依)하여 그 일부(一部)의 기재(記載)를 생략(省略)할 수 있음.

집화표(集貨票)의 양식(樣式)은 다음[左]과 같이 함.

(양식 생략[樣式省略])

제3절(節) 배 달(配達)

제39조(條)의 6 소화물급화물(小貨物扱貨物)은 하송인(荷送人)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것을 제(除)하고 별도(別途)로 정(定)한 구역(區域) 내(內)에 있어서 송달처(送達處)까지 배달(配達)함. 이 경우는 제65조(條)의2에서 정(定)한 바의 배달료(配達料)를 수수(收受)함.

1. 급외품(級外品).
2. 1개(箇)의 길이[長] 18척(尺), 중량(重量) 200근(斤: 면포[綿布]를 제[除]함) 또는 용적(容積) 40입방척(立方尺)을 초과(超過)한 것.
3.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것.
4. 외국화물(外國貨物).
4. 고가품(高價品)

(주[註]1) 「별도(別途)로 정(定)한 구역(區域)」이란 별도(別途)로 시달(示達)한 화물집배구

역(貨物集配區域)을 말함.

(주[註]2)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화물(貨物)은 집화(集貨)의 취급(取扱)을 하여도 배달(配達)의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제39조[條]의3 참조[參照])

제39조(條)의 7 화주(貨主)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될 만한 사유(事由)로 인(因)하여 송달처(送達處)에서 인도(引渡)하는 것이 불능(不能)한 때는 역(驛)에서 인도(引渡)를 함. 단(但)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특별히 재배달(再配達)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별도(別途)로 정(定)한 구역(區域) 내(內)에 한(限)하여 다시 제65조(條)의2에서 정(定)한 바의 배달료(配達料)를 수수(收受)하고 배달(配達)의 취급(取扱)을 함.

전항(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화물(貨物)의 취급시간(取扱時間) 및 화물보관료(貨物保管料)에 대하여는 제38조(條) 및 제68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함. 단(但) 취급시간은 송달처(送達處)에서 인도(引渡)를 할 만한 때부터 기산(起算)함.

(주[註]1) 제1항(項)의 「화주(貨主)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될 만한 사유(事由)」란 예를 들면 하송인(荷送人)의 지정(指定)한 송달처(送達處)에 하수인(荷受人)이 없는 경우, 하수인(荷受人) 부재(不在)의 경우 등(等)을 말함.

(주[註]2) 제2항(項)의 「인도(引渡)를 할 만한 때」란 화물(貨物)을 하송인(荷送人)이 지정(指定)한 개소(箇所)까지 보내어 도착한 때를 말함.

(주[註]3)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재배달(再配達)의 청구(請求)가 있을 경우는 지도수수료(指圖手數料)를 수수(收受)하지 아니하여도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재배달(再配達)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배달(配達)의 시행(지도[指圖])으로서 지도수수료(指圖手數料)를 수수(收受)하는 것으로 함. 배달 시행의 취급방법(取扱方法)에 대하여는 제76조(條)와 세칙(細則) 제99조(條), 제101조(條) 및 제106조(條) 참조(參照).

(주[註]4) 하수인(荷受人)이 타역(他驛)의 배달구역(配達區域) 내(內)에 전거(轉居)하는 등(等)의 이유(理由)로 인(因)하여 배달부화물(配達附貨物)을 인도(引渡)하는 것이 불능(不能)한 경우,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그 화물(貨物)의 전송수단(轉送手段)(에 대한)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지정(指定) 운송취급인(運送取扱人)에게 이것을 취급하게 하는 등(等) 가능한 한 그 희망(希望)에 따라 취급(取扱)하는 것으로 함.

제39조(條)의 8 역류(驛留)로 하여 수탁(受託)한 화물(貨物)을 착역(著驛) 도착(到着) 후(後)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배달수단(配達手段)(에 대한) 청구(請求)가 있을 경우는 화물(貨物)은 제39조(條)의6에 의(依)하여 배달을 취급(取扱)하는 것으로 하고 또 송달처(送達處)가 별도(別途)로 정(定)한 구역(區域) 내(內)인 때에 한(限)하여 제65조(條)의2에서 정

(定)한 바의 배달료(配達料)를 수수(收受)하고 배달의 취급(取扱)을 함.

(주[註]1) 「별도(別途)로 정(定)한 구역(區域)」이란 별도(別途)로 시달(示達)한 화물배달구역(貨物配達區域)을 말함.

(주[註]2)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배달원(配達員)의 청구(請求)가 있는 경우는 지도수수료(指圖手數料)를 수수(收受)하지 아니해도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배달수단(配達手段)(에 대한)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배달(配達)의 시행(施行)(지도[指圖])으로서 지도수수료(指圖手數料)를 수수(收受)하는 것으로 함. 배달 시행의 취급방법(取扱方法)은 제76조(條)와 세칙(細則) 제99조(條), 제101조(條) 및 제106조(條) 참조(參照).

(주[註]3) 송환화물(送還貨物)이 발역(發驛)에 도착(到著) 후(後)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배달수단(配達手段)(에 대한) 청구(請求)가 있을 경우는 본조(本條)에 의(依)하여 취급(取扱)하는 것으로 함.

제41조(條) 중(中) 「(주[註]1)」을 「(주[註]2)」로 개정(改正)하고, 아래[左]의 1호(號) 및 주(註)를 추가(追加)함.

4. 화물(貨物)이 소화물급(小貨物扱)으로서 집화부(集貨附) 및 배달부(配達附)로 아니한 경우.

(주[註]1) 집화(集貨) 또는 배달(配達)의 어느 쪽이든 일방(一方)의 취급(取扱)의 청구(請求)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착불(著拂)의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함.

제65조(條)의 2 집화(集貨) 및 배달료(配達料)는 아래[左]의 비율(比率)에 의(依)하여 이것을 계산(計算)함.

1. 1구(口)의 중량(重量) 800근(斤) 이하(二下)의 것
100근(斤)까지 각(各) 12전(錢)
100근(斤)을 초과(超過)한 경우는 50근(斤)까지를 증가(增加)할 때마다 6전(錢)을 추가(追加)함. 단(但) 801근분(斤分)의 요금(料金)을 지불(支拂)하는 편(便)이 저렴(低廉)한 경우는 제2호(號)의 율(率)에 의(依)함.
2. 1구(口) 중량(重量) 801근(斤) 이상(以上)의 것
50근(斤)까지마다 각(各) 5전(錢)
3.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것은 가, 나,의 구분(區分)에 의(依)하여 할증(割增)을 함. 단(但) 1구(口) 중(中)에 할증률(割增率)을 달리하는 것이 혼입(混入)된 때는 그 최고(最高)의 율(率)에 의(依)하여 이것을 계산(計算)함.
 - 가. 5할증(割增)의 것
 - (1) 의료용구(醫療用具)
 - (2) 타이프라이터(typewriter)

- (3) 오락유기구(娛樂遊技具)완구[玩具]를 제[除]하고, 바둑[碁], 장기[將棋], 당구기구[撞球器具], 골패[骨牌] 기타[(其他)]
- (4) 연예홍행물[演藝見世物] 용구(用具). 이사화물(移徙貨物)
- (5) 병풍(屏風). 칸막이[衝立]. 옷걸이[衣桁]. 액자[額]. 현판[額緣]. 경대(鏡臺). 전기(電氣). 가스(gas). 석유응용(石油應用)의 선풍기(煽風機) 및 난로(暖爐)
- (6) 악기(樂器). 축음기(蓄音機)악보[音譜], 침[針]을 포함[包含]함
- (7) 판유리(板琉璃), 거울[鏡], 요술병[魔法甕], 유리제품(琉璃製品)
- (8) 광고용(廣告用) 인형(人形). 조물(造物)
- (9) 물리·화학[理化學]. 관상(觀象). 측량용기계(測量用機械). 금전등록기(金錢登錄器). 계산기(計算機). 계산(計算尺)
- (10) 활어(活魚)물에 수용[收容]된 것
- (11) 사진기(寫眞機)활동사진기[活動寫眞機]. 촬영기[攝影機]를 포함[包含]함. 환등기(幻燈機)활동환등기[活動幻燈機]를 포함함
- (12) 인형[像]
- (13) 등기류(燈器類)
- (14) 살아있는 동물(動物)
- (15) 시계(時計)
- (16) 도기(度器). 형기[衡器]. 계기류(計器類)
- (17) 안경(眼鏡)
- (18) 모형표본류(模型標本類)

나. 10할증(割增)의 것

- (1) 식목(植木). 모형 정원[箱庭]. 분경(盆景)
- (2) 불단(佛壇). 궁(宮). 상여[神輿]. 장식용 수레[山車]. 명절용 인형[節句雛], 장식물[飾物]
- (3) 꽃삽화용(插花用) 잎[葉] 가지를 포함[包含]함. 조화(造化)잎, 가지, 열매[果實]를 포함함
- (4) 유골(遺骨)

(주[註]1) 운임(運賃)을 용적(容積)에 의(依)하여 계산(計算)하는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본조(本條)의 요금(料金)도 또한 용적(容積)에 의(依)하여 계산(計算)함.

제76조(條) 하송인(荷送人) 또는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 소지인(所持人)이 아래[左]에 게시(揭示)된 지도(指圖)를 하고자 할 때는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 또는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과 함께 그 청구서(請求書)를 발역(發驛) 또는 착역(著驛)(대금상환화물[代金相換貨物]에 있어서는 발역[發驛]에 한[限]함)에 제출(提出)해야 하는 것으로 함.

1. 탁송(託送) 취소(取消)
2. 발역(發驛)으로 송환(送還)

3. 수하인(受荷人) 또는 착역(著驛)의 변경(變更)

4. 인도(引渡)의 금지 또는 해제(解除)

5. 배달(配達)의 시행, 취소 또는 송달처(送達處)의 변경(變更)

운수(運輸) 상(上) 지장(支障)이 발생(發生)할 우려(憂慮)가 있다고 인정(認定)된 때는 전항(前項)의 지도(指圖)에 응(應)하지 아니하는 것 있을 수 있음.

(주[註]1) 천재사변(天災事變) 기타(其他) 불가피(不可避)한 사유(事由) 및 기타(其他) 사고(事故) 혹은 착오(錯誤)로 인(因)하여 하송인(荷送人)이 지도(指圖)를 한 경우에서도 본조(本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취급(取扱)함으로 함.

(주[註]1) 인도(引渡)의 금지는 「며칠간」, 「며칠까지」와 같이 기한(期限) 또는 조건부(條件附)에서는 그 청구(請求)에 응(應)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

(주[註]3) 하수인(荷受人)으로부터 배달부화물(配達附貨物)의 송달처(送達處)의 변경(變更) 또는 재배달(再配達) 등을 신청(申請)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39조(條)의 7 및 세칙(細則) 제92조(條)의 34, 또 역류화물(驛留貨物)의 배달수단(에 대한) 청구(請求)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제38조(條)의 8 참조(參照).

(주[註]4) 세칙(細則) 제99조(條)에서 제104조(條)까지 참조(參照)

제77조(條) 중(中) 「발송전(發送前) 탁송(託送) 취소(取消)의 경우」를 「탁송(託送) 취소(取消)의 경우」로 개정(改正)하고 아래[左]의 1호(號)를 추가(追加)함.

3. 배달(配達)의 시행(施行) 또는 취소(取消)의 경우

배달료(配達料)를 추징(追徵) 또는 환급(還給)함.

제79조(條) 제2항(項)제1호(號) 중(中) 「발송전(發送前) 탁송(託送) 취소(取消)의 경우」를 「탁송(託送) 취소(取消)의 경우」로, 동조(同條)2호(號) 중(中) 「발역(發驛)으로의 송환(送還), 수하인(受荷人), 착역(著驛)의 변경(變更), 착역(著驛)에 있어서 인도(引渡)의 금지 또는 그 해제(解除)를 하는 경우」를 「기타(其他)의 경우」로, 동조(同條) 주(註)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주[註]1) 집화부화물(集貨附貨物)에 대한 발송(發送) 전(前)이란 발역(發驛) 발송(發送) 전(前)을 말함.

(주[註]2) 동시(同時)에 2건(件) 이상(以上)의 지도(指圖)를 한 경우 예를 들면 착역(著驛) 변경(變更)과 동시(同時)에 하수인(荷受人)을 변경(變更)하는 경우에서도 1회분(回分)의 수수료(手數料)만을 수수(收受)하는 것으로 함.

(주[註]3) 인도(引渡)의 금지와 그 해제(解除)란 각각(各各) 별도(別途)의 지도(指圖)로 요금(料金)을 계산(計算)하는 것으로 함.

제84조(條)제1항(項)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수하인(受荷人) 또는 착역(著驛)의 변경(變更), 발역(發驛)으로의 송환(送還), 인도(引渡)의

금지 또는 배달(配達)의 시행의 청구(請求)에 응(應)한 경우 착역(著驛)에서 화물(貨物)의 보관(保管)을 할 때는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시간(時間)에 대하여 제67조(條)에서 정(定)한 바의 화차유치료(貨車留置料) 및 제68조(條)에서 정(定)한 바의 화물보관료(貨物保管料)를 수수(收受)함.

1. 하수인(荷受人) 변경(變更)의 경우는 역류화물(驛留貨物)에 있어서는 원(原)하수인(荷受人)에게 도착통지(到着通知)를 발(發)한 때부터, 또 배달부화물(配達附貨物)에 있어서는 원(原)하수인(荷受人)에 대하여 배달(配達)에 부친[附] 때부터 지도(指圖)의 청구(請求)에 응(應)한 때까지의 시간(時間).
2. 착역(著驛) 변경(變更) 또는 발역(發驛)으로 송환(送還)의 경우는 원(原)착역(著驛)에서, 역 두류[驛留] 화물(貨物)에 있어서는 하수인(荷受人)에게 도착통지(到着通知)를 발(發)한 때부터, 또 배달부화물(配達附貨物)에 있어서는 배달(配達)에 부친[附] 때부터 지도(指圖)의 청구(請求)에 응(應)한 때(제85조[條]의 경우는 수속[手續]을 한 때)까지의 시간.
3. 인도(引渡)의 금지의 경우는 하수인(荷受人)에게 도착(到着)의 통지(通知)를 발(發)한 때는 그 때부터, 또 이것을 발(發)하지 아니한 경우 금지(禁止)의 청구(請求)에 응(應)한 때(착역[著驛]에 도착[到着] 전[前] 그 청구[請求]에 응[應]한 때는 착역[著驛]에 도착[到着]한 때)부터 그 해제(解除) 또는 다른 지도(指圖)의 청구(請求)에 응(應)한 때까지의 시간.
4. 배달(配達)의 시행의 경우는 도착통지(到着通知)를 발(發)한 때(재배달[再配達]의 경우는 미리 배달[配達]에 부친 때)부터 지도(指圖)의 청구(請求)에 응(應)한 때까지의 시간.

제85조(條)제1항(項) 중(中) 「및 대금상환화물(代金相換貨物)의 도착(到着)의 통지(通知)를 발(發)한 날[日]의 익일(翌日)」을 「또는 대금상환화물(代金相換貨物)의 도착(到着)의 통지(通知)를 발(發)한 날[日]의 익일(翌日) 혹은 송달처(送達處)에 인도(引渡)를 할 수 있는 날[日]의 익일(翌日)」로 개정(改正)하고, 동조(同條)(주[註]1)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주[註]1) 제1항(項)의 「인도(引渡)를 할 수 있는 날[日]」이란 배달부화물(配達附貨物)을 화주(貨主) 지정(指定)의 송달처(送達處)까지 송부(送付)하였어도 하수인(荷受人) 부재(不在) 등(等)으로 인(因)하여 인도(引渡)함이 부득(不得)한 경우에 있어서 화물송달(貨物送達)의 날[日]을 말함.

제86조(條)제1항(項) 및 제87조(條) 중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 또는 하송인(荷送人)이 작성(作成)한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의 기재(記載)」를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의 기재(記載) 또는 하송인(荷送人)의 신고(申告)」로 개정(改正)함.